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합511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김민주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김준범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환, 권영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안완진, 이남억

변론 종결2021. 6. 10.

판결 선고2021. 7. 8.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20.부터 2021. 7.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2019. 2. 14.에 체결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 2019. 2. 14.에 체결된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 유가증권투자업, 투자자문업, 기업양수도 및 합병 주선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B와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관한 공동경영약정 등을 체결한 자이다.
-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기도 한 피고 B는 D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고,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이후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한편, F은 피고 B와 함께 D의 인수를 추진한 자로서 피고 B로부터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이에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은 자이다.
- 3) D는 선박 의장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여러 거래 및 약정의 대상이 된 회사이다.

나. 피고 B 등의 D 주식 인수 경과

- 1) E와 그 우호 투자자 G 투자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은 D의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8. 4. 4. D의 당시 최대주주인 H, I, J, K(이하 'H 외 3인'이라 한다)으로부터 L의 그 당시 총 발행주식의 52.39%에 상당하는 주식 5,854,703주를 74,998,745,430원에 매수하되, 다만 그 중 3,122,463주는 E가, 나머지 2,732,240주는 G이 각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449,874,543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2,499,121,801원은 실사 후 본계약 진행시, 잔금 14,999,749,086원은 실사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인 E 등이 지정한 이사 및 감사가 D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적법하게 경영권이 양도되는 당일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E 등이 18,499,874,543원을 위 계약일인 2018. 4. 4.까지 미리 정한 개설계좌에 예치하고, 그 예치금에서 위 계약금 7,499,874,543원을 지급하며, 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예치금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한편 동시에 주식 4,683,762주를 교부받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E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H 외 3인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 2)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은 2018. 5. 8. 원래 단일한 중도금을 2회로 분할하여 그 중 1차 중도금 22,499,623,926원은 2018. 5. 8.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권 2,341,881주를 인도받기로 하며, 2차 중도금 29,999,498,172원은 2018. 5. 30. 지급하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주권 2,341,881주를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계약 내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위 1차 중도금 22,499,623,926원이 H 외 3인에 지급되었다.
- 3) 그 후 H 외 3인과 E 및 G은 2018. 5. 30.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기존의 E와 G에서 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B, G,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로 승계,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상 양수인의 변동에 따라 당초 전체 양도대상 주식 5,854,703주 중 2,341,881주는 피고 B가, 1,951,542주는 G이, 1,561,280주는 M가 각각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D의 전체 지분의 20.95%를 취득하여 최대주주로 예정되었다. 한편, 2018. 5. 30. 지급기일인 위 2차 중도금 29,999,498,172원도 H 외 3인에 지급되었다.
- 4) M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으로 새롭게 추가되기 전 E는 M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즉 E는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M와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2018. 4. 27. M와 사이에, M가 150억 원으로 E 등이 인수하기로 한 D의 주식 중 1,170,96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M 및 E는 위 1차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2일1) 전 2018. 5. 4. 각 1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각 50억 원은 D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15일 전 부담하며, M가 위와 같이 자금을 부담하는 대가로 취득하게 될 주식은 주식인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계약 당사자 쌍방이 지정한 법무법인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한편, M는 2018. 5. 4. H 명의의 계좌로 110억 원을 E 명의로 입금하였고2), 위 금원이 E 등이 납부해야 할 1차 중도금 중 일부로 활용되었다.

5) 그 후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은 잔금 14,999,749,086원을 양수인이 2018. 6. 21. 지급하고, 양도인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잔여주식 1,170,941주를 교부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아가 양수인이 잔금지급을 완료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액면총액 17,550,000,000원의 증권을 양수인이 942,702,9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기로 확정하였다.

6) H 외 3인은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74,998,745,430원을 모두 지급받고 2018. 6. 21.경까지 D의 주식 2,341,881주를 피고 B에게, 1,951,542주를 G에, 1,561,280주를 M에 각각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동경영약정 등

1) M의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낸 원고는 2018. 5. 30. 피고 B와 사이에 D의 공동경영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이라 한다)과 공동경영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 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과 공동경영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경영 약정]

제2조 [경영권 주식]

① 갑3) 과 을4) 은 양 당사자의 명의(특수관계자 및 사실상 갑 또는 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로 본 합의일 현재 보유 및 향후 취득하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본 합의상의 경영권주식으로 하며, 경영권주식의 소유권 및 의결권 기타 부수되는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 및 행사한다.

② 본 합의 체결일 현재 경영권주식은 2,341,881주이다.

③ 을은 갑에게 2018년 5월 N5) 외 3인으로부터 대상회사의 경영권주식의 인수대금 중 50억 원을 잔금 기일까지 대여한다. 본건 대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④ 50억 원 중 2차중도금 지급일에 20억 원 대여하고 30억 원은 잔금 기일에 대여한다.

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위 주식을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이자의 50%를 부담한다.

제4조 [대상회사의 기관]

① 대상회사의 등기 이사 및 감사는 갑과 을이 지명한 동수 비율로 구성한다. 단,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초 해당 이사 또는 감사를 지명했던 갑 또는 을이 신규 선임될 이사 또는 감사를 지명하고 양 당사자는 신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 지정하기로 한다.

③ 갑은 제2조의 경영권주식의 인수 즉시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신규임원의 선임을 의결하기 위한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18. 6. 25. 예정)를 소집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토록 한다.

④ 갑 또는 을이 타 상대방이 지명 및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을 결과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소송의 제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추진하는 경우, 이를 추진한 당사자는 타 일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억 원을 청구 즉시 지급한다.

제5조 [의결권의 공동행사]

① 갑과 을은 대상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해당 이사 및 경영권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들은 해당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공동행사를 위하여, 본 합의의 체결 및 경영권주식의 취득 즉시 경영권주식의 의결권의 공동행사를 내용으로 법무법인에 공증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대상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 제4항에 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 [대상회사의 운영]

- ① 대상회사의 주요 임직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 ② 대상회사의 재무/회계/자금/공시/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갑과 을이 협의 구성한다.
- ③ 갑과 을의 대상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투자유치 약정]

피고 B(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L(이하 '대상회사'라 함)의 공동경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효력]

- ① 본 합의서는 갑과 을의 대상회사의 공동경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의 대금 관련 의무]

- ① 갑과 E는 G(이하 '투자조합' 이라고 한다)과 함께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H 외 3인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 5,854,703주와 경영권을 74,998,745,430원(1주당 인수가액 12,81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갑이 190억, 을이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인 M 외 1인(이하 'M 외 1인'이라고 한다)은 11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 ②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으로 300억 원, 잔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갑 그리고 M 외 1인이 각 부담할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갑	기 지급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190억원	장차 지급할 2차 중도금210억원	장차 지급할 잔금150억원
"을"이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인 M 외 1인	110억원	90억원	
합계	300억원	300억원	150억원

제3조 [공동경영을 위한 을의 의무사항]

- ① 을은 대상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재무적 투자자로 총 15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을이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인 M 외 1인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총 110억 원을 투자하였고, 본 합의서 작성 후 추가로 90억 원을 투자 총액 200억 원을 투자 유치하기로 한다.
- ② 을은 M 외 1인으로 하여금 본 합의서 작성 후 9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공동경영을 위한 갑의 의무사항]

- ① 갑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210억 원을 조달하여 M 외 1인이 조달한 90억 원을 더한 300억 원을 H 외 3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② 갑은 잔금 지급기일에 150억 원을 H 외 3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③ 갑은 2차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H 외 3인과 협의하여 M를 당초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갑은 M 외 1인이 투자한 20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 1,561,280주를 표창하는 주권 실물을 2차 중도금 지급 후 주권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경영권주식]

갑은 갑 명의로 취득할 최대주주 주식 2,341,881주(이하 '경영권주식' 이라고 한다)를 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장내 혹은 장외에서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제7조 [대상회사의 기관]

- ① 대상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갑과 을이 각 1/2씩 지명하기로 한다. 단,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초 해당 이사 또는 감사를 지명했던 갑 또는 을이 신규 선임될 이사 또는 감사를 지명하고 양 당사자들은 신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 지정한 이사 중 1인으로 하고, 대상회사의 CFO는 을이 지정한 이사 중 1인으로 한다.
- ③ 갑은 대상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18. 6. 25. 예정)에서 을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이 타 상대방이 지명 및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을 결과로 하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소송 제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의결권의 공동행사]

갑과 을은 대상회사의 이사회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경영권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공동으로 행사한다.

제10조 [대상회사의 운영]

- ① 갑과 을은 대상회사의 모든 사업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② 대상회사의 주요 비등기 임원 및 직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단,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 ③ 대상회사의 재무/회계/자금/공시/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구성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 ① 본 합의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지 또는 해제된다.
 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
 2. 갑이 본 합의서 제4조 내지 10조를 위반하는 경우
 3. 을이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 ② 위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본 합의가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본 합의서 제2조에 따른 투자원금 외에 이와 별도로 위약벌로 200억 원을 지급한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 M로부터 2018. 5. 4. 110억 원, 2018. 5. 30. 90억 원을 투자받았다6). 이에 M는 2018. 5.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인으로 새롭게 추가되었고, D의 주식 1,561,28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주식회사 O, 원고, 피고 B 사이의 공동경영약정

한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공동경영 약정 등과 별도로, 원고 및 피고 B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D를 공동경영하기로 하여 2018. 5. 30. 다음 내용과 같은 약정을 하고, O은 피고 B에게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P성형외과(대표 피고 B, 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대표이사 Q, 이하 '을'이라 한다)는 L(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H 외 3인(이하 '매도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바, O(대표이사 R, 이하 '병'이라 한다)과 대상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 을, 병은 2차 중도금(600억 원 완료 시) 병이 60억 원을 갑 지분에 투자하고 갑, 을, 병이 3일 내 임원 2명씩 선임하도록 한다.
2. 병이 2018. 6. 5. 이내 190억 지분 취득 시(차후 협의) 갑과 을 그리고 병이 임원 3명씩 공동으로 경영기로 한다.
3. 공동 경영 시 병은 대상회사 계약 및 자금유치, 경비 등으로 갑, 을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상기 약정을 위반할 시 갑, 을, 병은 각자에게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마. 피고 B와 O 사이의 주식 인수에 관한 약정

1) 그 후 피고 B는 2018. 6. 19. O과 사이에, 피고 B가 인수하기로 한 D 주식을 O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6. 28. 그 계약 일부를 변경하였는바, 이에 따라 체결된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피고 B를 가리킨다)이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한 코스닥 등록법인 L 총 인수주식 5,854,703주 중 갑이 인수하기로 한 주식지분을 을(O을 가리킨다)이 인수하기로 한다.

1. 주식인수 절차

2018. 5. 30. 약정서에 의한 60억 지분 취득에 근거 2018. 6. 30. 150억 지급(주식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갑과 을 협의 후 을에게 입고, 기존 27억 원 지급과 7월 5일 50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70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갑이 보관, 임시주총 10일 후 을이 73억 원 지급 후 주식을 을에게 지급) 최대주주 변경한다.

2. 경영이사 수 배당

6월 30일 150억 지급 후 잔금공시와 이사진 발표, M 2명, 감사 1명, O 3명(사내 2, 사외 1, 감사 1명) 피고 B 측 사내 1명, 사외 1명, 감사 1명

3. 임시주총 후 360억 원 완결 시 신규자회사 설립 후 피고 B 측 2명은(사내 1명, 사외 1명) 자회사 운영을 전적으로 하고, 전적으로 대상회사에서 사임하고 자회사를 운영하기로 한다.

4. 을 측에서 추천한 이사 3인, 감사 1인이 잔금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에서 부결되었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다.

5. 만약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을은 100억 원을 배상하고 주식은 갑이 반환받기로 한다.

2) S은 2018. 6. 21. O과 사이에, D 주식 20만 주를 60억 원에 매도하되, 다만 위 매매대금은 G이 지정하는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사이에서도, 위 T에 D 주식 130만 주를 1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D의 2018. 7. 16. 임시주주총회 결과

L는 2018. 7. 16.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선임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결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 중 피고 B의 선임은 가결되었으나, U, V, W의 각 선임 안건은 부결되었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중 X의 선임은 가결되었으나, Y, Z의 각 선임 안건은 부결되었으며, 감사 선임 안건 중 AA의 선임은 가결되었으나, AB, AC의 각 선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그 당시 D의 최대 주주는 피고 B였다.

사. O의 형사고소와 D 주식의 거래 정지

1) O은 위와 같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이후인 2018. 8. 6. 피고 B 등이 D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합계 287억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O이 추천한 이사 후보 등을 주주총회에서 모두 부결시키고 경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코스닥시장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는 2018. 8. 14. D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D는 2018. 8. 16. 최대주주인

피고 B와 O 사이에 피고 B의 지분 전부를 O에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이행이 지연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공시를 하였다.

3) AD는 2018. 9. 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의 지연 공시를 이유로 D에 벌점을 부과하였다.

4) 한편, D는 최대주주인 피고 B와 O 사이에 2018. 6. 19. 체결되어 2018. 6. 28. 최종 확정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양수인인 O의 잔금지급 등 의무불이행으로 피고 B의 2018. 10. 29.자 통보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AD는 2018. 11. 26. L가 공시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L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였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18. 11. 26.부터 L 주식 거래를 정지하였다.

5) O의 형사고소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던 중 O과 피고 B는 2019. 2. 7. 피고 B가 O에 합의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O은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롯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취소 및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피고들 사이의 D 주식 등 양수도계약

1) 피고 B가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위 주식 2,341,881주는 2018. 8.경 L 발행주식의 액면이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1,709,405주(2,341,881주 × 5)가 되었다.

2) 그런데 피고 B는 2019. 2. 14. 피고 C와 사이에, 액면분할된 위 주식 11,709,4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D의 경영권을 30,073,834,17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대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계약의 대상)

① 주식관련사항

1. 발생회사: L(이하 '회사'라고 한다)
2. 매매수량: 보통주 11,709,405주
3. 액면가: 100원/주

4. 매매단가: 주당 2,570원/주

5. 총 매매대금: 30,073,834,170원

② 경영권관련사항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부연하면 특정인 및/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함께 대상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사업운용, 기타 회사의 업무집행 등에 있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일체

제4조(매매대금)

①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 대금은 합계 30,073,834,170원으로 한다.

②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위 매매대금 중 20,073,834,170원은 제1조의 주식인수와 동시에 일괄 지급하되 대상 주식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계약 외 주식회사 AE에 대한 피담보채무 130억 원 및 이자금액을 양수인이 주식회사 AE에 직접 지급하고,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잔금 100억 원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인 2020. 2. 14. 지급하되 ① 제7조 양도인의 진술보장이 진실한 것으로 확정되고, ② 2019. 3. 26. 본건 주주총회일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 우발채무가 부존재하며, ③ 본건 주주총회 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추가적인 경영권과 관련한 소 제기 등 일체의 분쟁 등이 부존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될 것 등 회사 운영에 있어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④ 본 계약상 양도인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며, ⑤ 제12조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단,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위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그 잔여액을 지급한다.

제5조(주식 이전 및 명의개서)

양수인의 위 대금 중 20,073,834,170원이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됨과 동시에 양도인은 대상주식을 증권계좌에서 계좌 이체하는 방식(실물주권이 있다면 이의 교부도 병행)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되 제3조에 따르며,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가 이행되도록 한다.

3) D는 2019. 2. 14. 이 사건 대상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다고 공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1, 12, 13, 17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8. 5. 30. 피고 B에게 20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일시경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2019. 7. 18.자, 2019. 12. 18.자 위 피고 준비서면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B가 2018. 5. 30.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위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 제3조 제3항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D의 주식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50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사실,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은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30억 원은 같은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각각 대여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을 H 외 3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이 위 2018. 5.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드러난 위 20억 원이 수수된 원인에 관한 약정의 내용, 위 금원이 오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20억 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설령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2018. 8. 16. 원고에게 D 주식 20만 주를 대여하면서 이를 2018. 9. 30.까지 반환하기로

하되,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20억 원과 상계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에 따라 F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빌려 F으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인 AF에게 D 주식 20만 주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한 변제기 이후에도 위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억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D 주식 20만 주를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20억 원의 채무도 소멸하였다.

설령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이 대물변제약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주식 20만 주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20억 원의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D 주식 20만 주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AF는 2018. 8. 16. F에게 D 주식 20만 주를 차용하면서 이를 2018. 9. 30.까지 반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인의 책임으로 피고 B에 투자한 투자금 20억 원과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도 아닌 피고 B가(F이 피고 B로부터 D의 주식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 B의 명의로 계산으로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F도 아닌 원고에게 D 주식 20만 주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B는, 당시 AF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은 위와 같은 대리권을 가진 AF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B, O 사이에 체결된 2018. 5. 30.자 D 공동경영에 관한 약정을 AF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사실(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AF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8. 7. 24. 피고

B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 B에게 발행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약정서와 영수증에서는 모두 AF가 원고를 대리한다는 표시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은 AF가 원고를 대리한다는 의사를 추단할 아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이 AF가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분명하다. 즉, 을가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F이 수신인을 M 및 그 대리인 AF 앞으로 하여, '수신인(AF)이 2018. 8.경 발신인 F으로부터 D 주식 20만 주를 차용하고 2018. 9.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8. 10. 8.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F이 M를 위 내용증명의 상대방으로 표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F가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대리한 것이 아님이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위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약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 20만 주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상계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상계에 있어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같은 종류의 채권이어야 하는데, 피고 B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2018. 8. 16.자 약정에 기한 D 주식 20만 주의 반환채권은 수동채권인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같은 종류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위약벌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원고 명의로 200억 원을 피고 B에게 투자하고, 아울러 피고 B의 주식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피고 B에게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게 되면, 피고 B는 원고와 D를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원고가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가 추천한 이사 등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

제7조, 12조에 따른 위약벌 200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가 D의 공동경영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 체결 이전까지 원고가 유치한 재무적 투자자 M가 1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제2조 제1항),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상 2차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위해 M로부터 추가로 9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제3조 제1항), 원고는 M로 하여금 위 90억 원을 투자하게 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2항), 피고 B는 M가 추가 투자한 90억 원을 포함하여 다른 자금을 조달하여 2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제4조 제1항), 이 때 H 외 3인 등과 협의하여 위 M를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M가 투자한 200억 원에 상응하는 D 주식 1,561,280주에 대한 주권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정하였으며(제4조 제3, 4항), 나아가 공동경영을 위하여 D의 이사와 감사는 원고와 피고 B가 각각 1/2씩 지명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사 등을 지명한 당사자가 신규 이사 등을 지명하고, 실제 선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특히 피고 B는 D의 2018. 6. 25.경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로 약정한 사실(제7조 제1, 3항), M는 피고 B에게 합계 200억 원 투자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8. 5. 30. 피고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2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 M는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로 추가되었고, 이후 D 주식 1,561,280주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피고 B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 완료에 따라 D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피고 B는 2018. 7. 16. 개최된 D의 이사 등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가결하였지만, 원고가 추천한 이사 등의 선임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 제7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같은 약정 제12조가 정한 위약벌의 발생 요건이 일응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 제1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가 제7조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외에 별도로 위약벌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 B가 위약벌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 B의 제7조 등의 위반사실 이외에,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이 제12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전제로 한 피고 B의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억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인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4. 19.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날로 봄이 타당한 2019. 5. 19.의 다음날인 2019. 5. 20.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로부터 차주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재산인 D에 관한 이 사건 주식 등을 피고 C에 양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책임이 있는 피고 C은 주위적으로는 양도받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원물 그대로 반환하고, 예비적으로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라 할 수 있는 위약벌 200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주식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인 16,680,786,720원(= 이

사건 주식 가액 30,000,000,000원 - 선순위 피담보채권액 13,319,123,280원)이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16,680,786,72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에는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을 권리자로 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었고 이에 따른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대상계약 당시의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상 계약 이전인 2018. 5. 30. 피고 B에게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위약벌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20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채권은 위 대여금 채권과 달리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대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등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후에 환가된 경우에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는 주식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한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는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할

청구원인사실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나 제8,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8. 8. 23. AE와 사이에, 피고 B가 AE로부터 130억 원을 변제기 2019. 8. 23., 이자율 연 8%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AE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되, 다만 당시 피고 B가 보유하던 D의 주식이 액면분할 중인 관계로 AG계좌에 입고된 2,001,881주에 대해 100억 원의 질권을, AH 계좌에 입고된 340,000주에 대해 30억 원의 질권을 각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 B는 2018. 8. 24. AG에 AE를 채권자로 하여 질권설정금액을 100억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AH에도 AE를 채권자로 하여 질권설정금액을 30억 원으로 하는 질권설정승낙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양 증권사에 분할 입고된 당시 보유주식 전부인 2,341,881주에 관하여 합계 130억 원을 설정금액으로 하는 질권을 AE 앞으로 설정하고, 같은 날 AE로부터 대여금 13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대상 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AE 명의의 질권설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무액 13,319,123,280원을 2019. 2. 14. AE에 직접 지급한 사실, AE은 2019. 2. 14.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피고 B에 대한 대여원리금 명목으로 13,319,123,280원을 C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B가 이 사건 대상 계약을 통해 처분한 이 사건 주식에 AE를 채권자로 하는 합계 금액을 130억 원으로 하는 질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위 피담보채권액 13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위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 당시 평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 당시 객관적인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 이 사건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정한 이 사건 대상 계약의 매매대금 30,073,834,17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 당시의 평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AD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고7), 피고 C은 이를 전제로 D의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기 이전인 2018. 11. 26.의 종가가 1주당 1,100원으로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2,880,345,500원(= 액면분할 후 이 사건 주식수 11,709,405주 × 1,100원)으로서 AE의 앞서 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상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이 사건 대상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평가액이 AE 앞으로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여전히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나머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한 원상회복청구도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전경호

판사남민영

별지

- 1) 실제로는 2영업일로 보인다.
- 2) 2020. 11. 11.자 피고 B 준비서면 참조.
- 3) 피고 B를 가리킨다.
- 4) 원고를 가리킨다.
- 5) H의 오기로 보인다.
- 6) 2019. 7. 18.자 피고 B의 준비서면 참조.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AD허가를 받은 AD(이하 "AD"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AD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